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348호 2014. 7. 28.(월)

공 고

- 사천시 수도사업소 공고 제20143호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
- 사천시 수도사업소 공고 제20144호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4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편집 : 기획감사담당관실 ☎ 831-2215·FAX 831-6011

사 천 시 공 보

제348호(2)

공 고

사천시 수도사업소 공고 제2014-3호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7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표준급수조례 개정(2011. 12. 21)사항 적용, 규제완화 사항 반영,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3. 8. 6) 사항에 따라 각종 민원서식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및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 별지 제9호 서식부터 별지 제11호 서식

까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각각 개정

나. 별지 제1호 서식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신청서를 삭제

다. 별지 제4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계좌 이체일을 삭제

사 천 시 공 보

제 348호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수도사업소장)

(우편번호 : 664-804, 주소 :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전화 : 831-5510, 팩스 : 831-6061)

사 천 시 공 보

제348호(4)

사천시 수도사업소 공고 제2014-4호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7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표준급수조례 개정(2011. 12. 21)사항 적용, 규제완화 사항 반영,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3. 8. 6) 사항에 따라 각종 민원서식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및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급수공사 신청시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는 항목 추가 (안 제6조제2항)
- 나. 급수공사 착공기간 단축(7일→5일)으로 사용자의 조속한 급수사용(안 제8조제4항)
- 다. 노후계량기 및 동파계량기 개조공사 비용을 시에서 부담(안 제11조제1항)
- 라.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확대(30일 이내, 최대 4회 분납)(안 제14조제7항 신설)
- 마. 원인자부담금 정산 및 과오납 처리 방법 신설(안 제14조의1, 안 제14조의2 신설)
- 바.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따른 수도요금 감액(안 제26조제3항)
- 사. 급수중지 기간 확대(3개월→6개월)(안 제27조제2항)
- 아. 급구중지 또는 정수처분중에 구경별 기본요금 부과 규정 삭제(안 제29조제3항)

사 천 시 공 보

제348호(5)

자. 수도요금 연체요율 완화 및 연체금 산정방식 개선 근거 규정
(3%→2%, 월할계산→일할계산) (안 제35조)

차.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 범위내에서 →범위에서(안 제13조제5항)
-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안 제21조제1항제5호)
- 의하여 → 따라(안 제32조제2항및제3항)
-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칙에 따라(안 제40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수도사업소장)

(우편번호 : 664-804, 주소 :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전화 : 831-5510, 팩스 : 831-6061)